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조신행의원 외 10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
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5월 28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춘 용

#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5월 20일 조신행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와 북한 지역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).
- 나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(안 제2조).
- 다.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.
- 라.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.
- 마.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내지 제10조).
- 바.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본 제정 조례 안은

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문 제11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조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정의를,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,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,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#### ○ 본 조례안 검토결과

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간 상호이해의 증진 방안과 관련사업을 지원 및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